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단체 임직원 책임 강화〉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46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27.
3. 회부연월일 : 2025.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음. 이렇게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자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

현행법에 따르면 임용권자 등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등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는데,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자가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에 조기복귀하는 때에도 이와 같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파견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래의 소속 기관·

단체로 복귀하는 때에는 해당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지 등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파견받아 근무하는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파견민간전문가’라 함)이 파견기간을 충족하기 못하고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로 복귀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형사사건 기소, 수사·조사 중인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파견받아 근무하는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파견기간을 충족하기 못하고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로 복귀하는 때에는 해당 임직원이 제78조의4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u>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u>확인하고 그 결과를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⑤ ----- ----- ----- ----- ----- ----- <u>-복무, 복귀 시 비위 관련 확인 및 통보 절차</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받은 임직원의 복귀 시 비위 관련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로 복귀하는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2. 검토의견

민간전문가의 국가기관 파견근무 제도는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2년(1년 연장 가능) 이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임.¹⁾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파견받은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⑦ 삭제

⑧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⑨ 인사혁신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 운영, 민간기관 임직원의 원 소속기관 복귀여부 판단 및 파견자에 대한 복무 지휘·감독 등에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파견민간전문가의 필요성, 파견자의 자격 등을 검토 후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쳐 파견을 시행하고,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으며,

파견민간전문가가 국가의 중요 사업이나 특수 업무를 수행하며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파견민간전문가가 파견 기간을 채우지 않고 원래 소속 기관으로 조기 복귀할 때는 비위 확인 절차가 미비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비위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파견 기관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에게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파견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기 복귀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형사사건 기소, 수사·조사 중인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 그 결과를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하려는 취지임.

⑩ 제9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점검 결과의 활용 또는 조치 내용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²⁾ 퇴직 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 중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음.

개정안은 파견민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형사사건 기소, 수사·조사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에서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의원면직 제한 제도 주요내용》

□ 제도 취지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 목적으로 함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하도록 하고 **일정 징계사유 존재 시 징계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

□ 주요내용

- 징계사유 유무의 확인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형사기소, 중징계 의결요구, 수사·감사 중 여부를 확인***
 - * 감사원,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당 기관은 10일 이내 회신)
- 비위혐의가 경징계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 면직 가능
 - 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없거나, 경징계 사유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원에 따라 면직 가능
- 비위혐의가 중징계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 면직 제한
 - 대상자에게 **중징계 사유가 있거나, 중징계 사유로** 판단되는 비위로 수사·감사·형사기소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 제한**
 - 대상자에 대해 **지체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해임·파면 의결 시 그에 따라 면직**하고 그 밖의 경우는 의원면직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징계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규율이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적 제재의 일종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그 목적이나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별도로 이루어지게 됨.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 민간파견자의 조기 복귀 시 형사사건 기소, 수사·조사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도록 할 경우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민간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이 부족해 보이며,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임직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기 복귀하는 파견민간근로자의 형사사건 기소 또는 수사·조사 진행 여부를 확인·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는 공익적 필요성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인사혁신처는 파견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 등을 확인하여 통보해야 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국가기관의 장은 파견직무와 관련이 없는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확인·통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반면,

범죄혐의 등을 원 소속 기관·단체에 반드시 통보해야만 대상자에 대한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